

KAIST 기계기술연구소 연성생체역학연구실

연수연구원 모집 공고

1 모집분야 및 인원

| 직종 | 직명 | 모집분야 | 모집구분 | 인원 |
|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|
| 연구직 | 연수연구원A | 연구직 | 경력무관 | 1명 |
| | 연수연구원B | 연구직 | 경력무관 | 1명 |

※ 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.

2 모집분야 직무내용

| 모집분야 | 인원 | 주요업무 |
|-------|----|---|
| 연수연구원 | 2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Mechanobiology 기반의 질병 모델의 설계 및 구축 ○ 세포 표현형 정량화를 통한 세포 분류 기법 개발 및 실험 구성 ○ 세포-인터페이스 상호작용에 대한 세포 역학 기반의 분석과 이를 통한 상사 모델 구축 |

※ 자세한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(별첨) 참고

3 지원자격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---|---|
| 지원자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- 임용일 기준 공학 또는 기계공학 박사학위 소지자 |
| 우대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: 해당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(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) |
| 결격사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-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- 「병역법」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-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서 처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|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-|---|
| |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대상자 - 2019.9.1. 이후 KAIST와 최초로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· 「병역법」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·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(단, 체류자격이 영주(F-5)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) ·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를 임용하는 경우 · 연수연구원을 임용하는 경우 · 연수연구원 또는 「병역법」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한 지를 위촉연구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써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|

4 근무조건 및 근무지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------------|--|
| 고용형태 | 기간제 |
| 근무형태 | ■ 전일제 (주5일, 9시~18시) |
| 계약기간 / 연수연구원A | 2023. 02. 20 - 2023. 08. 19 (참여과제 또는 사업 조기종료 시 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.) |
| 계약기간 / 연수연구원B | 2023. 02. 20 - 2023. 12. 31 (참여과제 또는 사업 조기종료 시 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.) |
| 급여 | 3,000,000원/월 (세전기준) |
| 근무지 | 한국과학기술원 본원 |
| 근무부서 | 기계기술연구소 연성생체역학연구실 |
| 임용예정일 | 2023. 02. 20 (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) |

5 지원방법 및 기간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---|--|
| 지원방법 | <p>본 공고와 함께 게시된 지정양식을 작성 및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(계약기간 확인 후 지원형태 명시하여 제출)</p> <p>- 접수 이메일: kjh2239@kaist.ac.kr</p> <p>(※ 지정양식 외 별도양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및 자필서명이 누락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.)</p> |
| 접수기간 | - 2023. 01. 13. ~ 2023. 01. 30 오후 12시까지 |

6 채용일정 및 합격자 처리기준

가. 채용전형 일정

| 구분 | 평가방식 | 합격배수 (예비합격배수) | 일정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서류전형 |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 평가 | 3배수 (2배수) | 2023.02.01.(예정) | 비대면 (Zoom) |
| 면접전형 | 지원자 개별 면접 | 1배수 (2배수) | 2023.02.06.(예정) | 비대면 (Zoom) |
| 결격사유 검증* | <p>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</p> <p>-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</p> | - | 채용 전까지 | |
| 임용 | 신규임용 | - | 2023.02.20.(예정) | |

* 서류전형 지원인원이 서류심사 합격가능 인원(서류심사 합격배수:3배수) 이하인 경우 서류전형 생략 가능.

* 면접전형 합격자(채용후보자)를 대상으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과 임용 결격사유를 검증
 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이 불가능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.
 - 임용 결격사유 검증 결과,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.

※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.

나. 합격자 처리기준

| 구분 | 처리기준 |
|----------|---|
| 법정 가점 사항 |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관련 법에 맞도록 적용* |
| 합격자 처리기준 | - 평가위원 평균점수(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)에 가점 및 자격점수를 포함하여 서류전형은 50점 이상, 면접전형은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배수에 맞게 선정 |
| 동점자 처리기준 | (서류전형) 관련 규정에 따라 최하위 합격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다음 단계의 전형 응시 기회 부여 (면접전형) 관련 규정에 따라 ①취업지원대상자, ②장애인, ③지역인재, ④이전 전형 고득점자, ⑤면접전형의 평가위원 평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. |

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 ②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7 전형단계별 제출서류

가.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

| 제출서류 | 제출시기 | 제출방법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|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| 채용담당자 이메일 제출 |

나. 결격사유 검증

- 제출대상자: 면접전형 합격자(채용후보자)
- 제출방법: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
- 증빙자료는 합격 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
- 모든 증빙서류는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.
- 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,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.

1)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진위확인

| 제출서류 | 목적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사항 증빙자료 - 경험·경력사항¹⁾ 증빙자료 -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(보훈대상자)²⁾ | <p>응시원서 기재내용 진위확인</p>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 | 자기소개서 기재내용 진위확인 |

1) 경력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경력증명서, 4대보험 중 1개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, 소득금액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.

2)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제출처를 KAIST(또는 한국과학기술원)로 발급받아 제출

2) 임용 결격사유 검증

| 제출서류 | 목적 |
|--|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- 개인신용정보조회서 -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 - 채용신체검사서 (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서로 발급) - 병적증명서(해당자) - 성범죄경력조회서 | 임용 결격사유 검증 |

8 이의신청 및 서류반환신청

가. 이의신청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---|---|
| 신청기간 | -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|
| 신청방법 | - 채용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 - 응시자는 이의제기 신청양식을 기재해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 (신청양식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송부) |
| 처리대상 | -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(외부 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(※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.) |

나. 채용서류 반환신청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-----|--|
| 청구기간 |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|
| 신청방법 | - 채용 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채용 담당자에게 제출 (신청양식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송부) |
| 반환대상 | - 채용서류(기초심사자료, 입증자료, 심층심사자료 등) |
| 반환제외대상 | -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 - 지원자가 KAIST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 |

9 유의사항

- KAIST 기간제근로자 퇴직 후 재임용 제한 규정 관련, KAIST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 상 경력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,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기재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취소를 할 수 있음.
- KAIST에 기간제근로자로 재직 중인 경우,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이 불가함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, 누락, 지원자격 미충족 및 연락불능, 합격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.
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류 제출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.
-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, 편견유발 항목*을 기재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음.

* 편견 유발 16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1) 편견 유발 6대 항목: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교명, 성별, 생년월일(연령), 사진
 - 2) 편견 유발 10대 항목: 결혼, 재산, 취미(특기), 종교, 신장(체중), 학력, 전공, 학점, 외국어, 추천인
- * 예시: 출신학교를 추측할 수 있는 학교이메일, 학교기숙사 주소, 학교동아리명, 출신학교 유명인선배 등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함. 누나, 오빠, 형, 아들, 딸(기혼), 아내 등의 단어를 피하도록 함.

-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 및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(증빙서류 검토과정 중 부득이하게 알게 된 정보 포함)는 평가위원

에게 제공하지 않음.

- 전형일정 및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지원자들에게 개별 통보함.
- 채용 관련 부정행위 처벌사항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취소, 채용취소 또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채용취소자의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함.

1. 타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2. 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자
3. 소정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는 등 응시자격 부적격자
4.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자
5. 청탁·압력·뇌물 등을 통한 채용비리 당사자 또는 연루자
6. 부정합격자*

*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

- 비위면직 취업제한 대상자의 경우 합격취소·채용취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
- 채용확정자(면접전형 합격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)의 채용취소, 임용불응,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채용예비후보자(면접전형 예비합격 차순위자)를 선정할 수 있으며, 기관 필요 시 최대 1년 이내에 채용을 할 수 있음.
- 신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* 재직여부를 확인하며, 파악된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함.

* 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·외가 4촌 이내

- 채용담당자: 채용담당자 연락처(042-350-3270, kjh2239@kaist.ac.kr)

○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연락처: KAIST 인사팀(recruit@kaist.ac.kr)